

KCGS Report

제13권 9호 | 통권 제165호
2023.9.



한국ESG기준원

KCGS Report 제13권 9호

발행일 : 2023년 9월 27일

발행인 : 심인숙

발행처 : 한국ESG기준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TEL: 02-3775-3339 www.cgs.or.kr

제작 : 경성문화사 02-786-2999

등록NO : 영등포, 라00532

※ 이 보고서의 견해 및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ESG기준원에 귀속되며,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상기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해당 보고서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표시 바랍니다.

KCGS Report

제13권 9호 | 2023. 9.

● ESG 동향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동향	2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분석	13

● Global News

1. 캐나다, 화석연료보조금 단계적 폐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23
2.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동향	25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동향

한지혜*

- ▶ 자본시장의 표준화된 ESG 정보에 대한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발표되고 유럽,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시 의무화 도입을 앞두고 있음
- ▶ 최근 해외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및 규제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각 기준 간의 상호운용가능성 (interoperability) 논의는 국내 ESG 공시 제도 개선 과정에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할 과제임
- ▶ 이에 최근 3년간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복수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활용하고 제3자 검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공시 의무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기업의 노력이 확인됨
- ▶ 그러나 ESG 공시가 비재무 영역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무보고 영역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규제당국을 비롯하여 기업 및 투자자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토대로 상호운용가능성이 높은 단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대두

- 그간 국내외 ESG 정보는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제시하는 자율적 지침을 기반으로 기업이 선택하는 기준과 정보공개 범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음
 - 이에 글로벌 자본시장의 참여자들은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일관되고 비교검증 가능한 양질의 정보 활용에 제약이 존재하였으며, 기업 또한 거세지는 ESG 정보공개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음
- 지난 6월 26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이하 ISSB)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이하 S1), 기후 관련 공시(이하 S2)로 구성된 최초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을 발표함¹⁾
 - 2021년 11월 IFRS 재단은 국제표준으로 활용될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제정 및 관리를 위해 ISSB를 설립하였고, G20,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FSB(금융안정위원회), WEF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책임투자본부 책임투자팀 선임연구원, jghan@cgs.or.kr

1) ISSB issues inaugural global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 IFRS Foundation, 2023.06.26.

(세계경제포럼) 등 국제기구의 지지를 받으며 전 세계 지속가능성 공시의 기준선(baseline)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함

- 또한 국내를 포함하여 주요 해외 규제당국에서는 ESG 공시 의무화를 도입하거나 계획하고 있어 지속가능성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음을 의미함
 - 지난 7월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이하 ESRS)의 최종안을 확정 발표하였으며, 이에 앞서 2022년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는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규칙 초안을 발표함²⁾³⁾
 -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2021년부터 ESG 공시 관련 단계적인 의무화 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2023년 1월 ISSB의 대응 및 국내기준 검토를 위한 KSSB를 출범하여 한국형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⁴⁾⁵⁾
- 이에 기업 및 기관투자자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시 기준 및 관할지역별 규제 간의 상호운용가능성(interoperability)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해외 공시 제도별로 조금씩 다른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고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해외 기준 및 규제를 비교하고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 기업의 활용기준 등 공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해외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비교

- **(IFRS S1·S2)** 우선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이에 S1은 통합 보고 체계의 개념을 기반으로, 투자자를 위한 가치 창출 과정에서 기업과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자원과 관계에 관해 설명하도록 함
 - 또한 공시 기준 S1, S2 모두 TCFD 프레임워크와 일치하도록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4가지 측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나, TCFD 권고안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S2는 S1에서 기업이 식별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준으로 산업 공통(cross-industry) 지표 7개(온실가스 배출량, 전환 위험, 물리적 위험, 기후 관련 기회, 자본 배분, 내부탄소가격, 보상)와 산업별 공시 요건을 추가로 제시함

2) The Commission adopts the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uropean Commission, 2023.07.31.

3) SEC Proposes Rules to Enhance and Standardize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SEC, 2022.03.21

4)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2021.01.14

5)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출범식 개최, 회계기준원, 2023.01.27.

〈표 1〉 IFRS S1·S2 주요 내용 요약

목적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가 기업에 자원 제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S1)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 (S2)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며 산업전반 및 산업별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 (TCFD 권고안 통합)	
기준 체계	[핵심항목] • 지배구조 • 전략 • 위험관리 • 지표 및 목표	[일반 항목] • 보고 기업 • 연계된 정보 • 공정한 표시 • 중요성 • 비교 정보 • 보고 빈도 • 정보의 위치 • 추정·불확실성의 원천 • 오류 • 준수 문구
IFRS S2 공시 체계	[항목] • 지배구조 • 전략 • 위험관리 • 지표 및 목표	[부록] • 산업별 공시 요건 * 대부분 SASB 기준 차용, SASB와 다른 부분은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해 별도로 표시
적용대상	국가별로 적용될 기준에 따라 상이	
시행일	2024년부터 적용하되,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5년부터 공시 의무화(FY2024)	
검증	공시 내용 전반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요구 하되, 국가별로 적용될 기준에 따라 상이	
경과규정	• IFRS S1·S2 기준 적용 첫해, 다음 경과규정 제공 ① 비교정보의 미공시 허용 ② 기후 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는 미공시 허용 ③ 관련 재무제표와 동시가 아닌, 차년도 반기 재무제표 발표 시점에 공시 허용 ④ Scope 3 배출량 정보에 대한 미공시 허용	

출처: ISSB, 회계기준원, KCGS

- **(ESRS)** ESRS는 2개의 공통 표준(Cross-cutting Standards)과 10개의 주제별 표준(Topical Standards)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84개 정보공개 요건(disclosure requirements), 1,144개 정량 및 정성 데이터(data points)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공시 기준임
- 공통 표준은 일반원칙이 기술된 ESRS 1과 일반 공시사항을 규정한 ESRS 2로 구분되며, ESRS 2는 IFRS S1과 동일하게 TCFD 프레임워크를 주제별 표준의 보고 방식으로 설정함
- 또한 ESRS는 기업이 공시할 정보를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평가를 통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단일 중대성 평가에서 고려하는 재무적 중대성(financial materiality)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동이 사회나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미친 영향 관점에서의 중대성(impact materiality)도 측정하도록 함
- 즉 ESRS는 기업 자체뿐만 아니라 가치사슬에 포함된 협력업체, 지역사회,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며, 주제별 표준에서 나아가 2024년 산업별, 기업별(상장 중소기업, EU 역외 기업) 표준 입법화를 위해 2023년 내 Second Set 초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짐

〈표 2〉 ESRS 주요 내용 요약

목적	지속가능성 공시가 단순히 규정을 준수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업의 행동변화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재무보고와 동등한 수준으로까지 발전하도록 공시할 범위와 기준 명시		
기준 체계	[공통 표준] • 일반 원칙 (ESRS 1) • 일반 공시사항 (ESRS 2)	[주제별 표준] 환경 • 기후변화(E1) • 오염(E2) • 수자원 및 해양자원(E3)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E4) •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E5)	사회 • 기업 자체 노동력(S1) • 가치사슬 내 근로자(S2) • 영향권 내 지역사회(S3) •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S4) 지배구조 • 사업 수행방식(G1)
적용대상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예정 • (FY2024~) 기존 NFRD 적용 대상 회사(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 • (FY2025~) NFRD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다음 중 2개 조건 충족 회사 (근로자 250명 초과, 총자산 2천만 유로 초과, 순매출 4천만 초과) • (FY2026~) 상장 중소기업이면서 다음 중 2개 조건 충족 회사 (근로자 50명 초과, 총자산 4백만 유로 초과, 순매출 8백만 초과) • (FY2027~) EU 내 순매출 1억 5천만 유로 초과하면서 자회사 또는 일정 요건(순매출 4백만 유로 초과)을 갖춘 EU 역외 기업		
시행일	기업 규모에 따라 2025년부터 단계적 공시 의무화(FY2024)		
검증	• 도입 3년 차까지 제한적 확신 수준(limited assurance) 적용 • 도입 6년 이후 합리적 확신 수준(reasonable assurance) 적용		
경과규정	• ESRS 적용 첫째, 다음 경과규정 제곱 ① 모든 기업은 기후와 관련되지 않은 환경 이슈(E2~E5)가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 표준 '기업 자체 인력(S1)'과 관련된 특정 정보(사회 보장, 장애인, 안전보건, 일과 삶의 균형 등) 생략 가능 ② 직원 수 750명 미만인 기업의 경우, 1) Scope 3 배출량 정보 및 기업 자체 인력(S1)에 대한 공시 생략 가능 2) 공시 2년째까지 생물다양성(E4) 및 가치사슬 내 근로자(S2), 영향권 내 지역사회(S3),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S4) 생략 가능 •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첫 공시에 대해 2년 유예 조건 부여(FY2028)		

출처: ESRS, KCGS

- **(SEC)** SEC는 비즈니스 또는 연결 재무제표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 관련 리스크 정보를 증권신고서와 정기 보고서(Form 10-K, Form 20-F)에 공시하도록 하는 규칙을 제안하였으며, 오는 2023년 10월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짐
- 해당 규칙안은 ISSB, ESRS와 달리 기후 주제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나, 보고 방식은 동일하게 TCFD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중대성 평가 결과에 따라 공시할 것을 요구함
- 한편, 재무제표 주석 공시에 대해서는 기후 관련 재무적 영향 지표(financial impact metrics)와 지출 지표(expenditure metrics)에서 측정된 값이 관련 재무제표 계정의 1%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각각의 구체적인 정의 및 지표 도출 방법, 예측·가정에 미치는 영향(impact on estimates and assumptions) 등도 공시 대상 정보로 포함됨

〈표 3〉 SEC 기후 공시 규칙안 주요 내용 요약

목적	투자자에게 보다 비교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기후 관련 리스크 정보를 제공	
기준 체계	[기후 관련 공시] •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한 지배구조 및 감독 • 전략, 비즈니스 모델 및 전망에 미치는 영향 • 온실가스 배출 공시	[재무제표 주식 공시] • 재무적 영향 지표 • 지출 지표 • 예측·가정에 미치는 영향
적용대상	온실가스 의무 공시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예정 •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 상장 대기업: Scope 1, 2 (FY2023~), Scope 3 (FY2024~) • 시가총액 0.75억~7억 달러이면서 매출 1억 달러 이상인 상장 중견기업 : Scope 1,2 (FY2024~), Scope 3 (FY2025~) • 시가총액 0.75억 미만 또는 시총 0.75억~7억 달러이면서 매출 1억 달러 미만인 소기업 : Scope 1, 2 (FY2025~), Scope 3 면제	
시행일	기업 규모에 따라 2024년부터 단계적 공시 의무화(FY2023)	
검증	• Scope 1·2 공시에 대한 제3자 검증 의무화 ① '24년 제한적 확신 수준(limited assurance)부터 적용 ② '26년 합리적 확신 수준(reasonable assurance)으로 강화	

출처: SEC, KCGS

- **(소결)** 종합하자면 해외 주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은 공통적으로 ESG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재무정보로 인식하며, 이에 따라 ESG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중요하게 여김
- 재무적 중대성을 추구하는 IFRS S1·S2와 SEC는 재무제표와 연계하여 공시하도록 하며, 이중 중대성을 추구하는 ESRs도 재무제표와의 동시 제출을 요구함
- 또한 분석한 3개 기준 모두 도입시기와 적용대상 및 범위는 상이하나 원칙적으로 제3자 검증을 요구하며, 나아가 ESRs와 SEC는 검증 수준의 고도화까지 계획하고 있음
- 한편, 근로자 수, 자산총계, 매출액, 시가총액 등으로 적용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단계적 도입 방식을 채택하고 경과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공시 기준의 연착륙을 도모하는 것이 확인됨

지속가능성 공시의 상호운용가능성 논의

- ISSB의 핵심 목적은 다양한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 및 기준과 관련된 복잡성을 줄여 기업의 보고 부담을 해소하고 보고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운용가능성(Interoperability)'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음⁶⁾
- ISSB는 IFRS S1·S2와 ESRs, SEC 등 주요 관할지역의 요구사항 및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같은 기존 자발적 표준 간의 공통 항목을 식별하고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보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함

6) Project Summary of IFRS S1 and S2, IFRS Foundation, 2023.06.26

- 특히 IFRS S1·S2 제정 과정에서 가능한 IFRS 회계기준의 관련 개념을 사용하고, 보고 방식을 TCFD 권고안을 통합함과 동시에 CDSB(기후정보공개표준위원회), IIRC(국제통합보고위원회) 및 SASB(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의 ESG 공시 지침을 고려함
- 또한 ISSB는 2022년 12월 각국 정부 및 기준제정기구로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이하 SSAF)을 구성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함⁷⁾
 - SSAF는 한국을 비롯해 유럽, 영국, 중국, 일본 등 13개국 정부가 참여하여 기준 제·개정 시 공식 자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옵저버(observer) 기관으로 SEC, 유럽집행위원회(EC), IOSCO, GRI가 참여하여 다른 보고 요구사항과의 양립을 충분히 고려함
- 그 외에도 GRI, EFRAG 등 관련 기관들은 개별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각자의 기준과의 상호운용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GRI-IFRS) GRI는 2022년 3월 IFRS 재단과 각각의 표준 설정 위원회인 GSSB,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수립 활동을 조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⁸⁾
 - 2023년 6월 IFRS S1·S2 확정에 따라 GRI Standards와의 연계를 위해 두 개의 표준을 병행하여 사용하기 위해 각각의 지침과 자료를 상호 참조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보고 활동 간소화를 위한 디지털 분류법 등을 개발하고 있음⁹⁾
 - (EFRAG-GRI) EFRAG의 경우 2023년 9월 GRI와 상호운용가능성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ESRS에 따라 보고하는 기업은 GRI를 참조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간주함¹⁰⁾
 - 또한 향후 보고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기 위해 각자의 표준에 대한 디지털 분류법 및 다중 태그 지정 시스템 등의 기술 협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음
 - (EFRAG-IFRS) 더하여 EFRAG는 2023년 8월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간의 상호운용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공시 지원을 위해 두 개의 표준을 매핑한 표를 공개함
 - EFRAG는 ESRS와 IFRS 기준 간에 매우 높은 수준의 상호운용가능성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규제 기업이 IFRS 기준에 따라 별도로 보고해야 할 부담을 줄였다고 평가함¹¹⁾
 - 한편,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매핑한 결과 기후 공시와 관련되어 두 가지 사항이 주요한 차이점으로 확인됨¹²⁾

7) [보도참고] 한국, IFRS재단의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SAF) 초대 회원국으로 선임, 금융위원회, 2022.12.22

8) IFRS Foundation and GRI to align capital market and multi-stakeholder standards to create an interconnected approach for sustainability disclosures, IFRS Foundation, 2022.03.24

9) Progress towards a strengthened sustainability reporting system, GRI, 2023.06.26

10) EFRAG-GRI JOINT STATEMENT OF INTEROPERABILITY, EFRAG, 2023.09.04

11) EFRAG assessment of interoperability with IFRS Sustainability Standards - Cover Note, EFRAG, 2023.08.23

12) Interoperability between ESRS and ISSB standards EFRAG assessment at this stage and mapping table, EFRAG, 2023.0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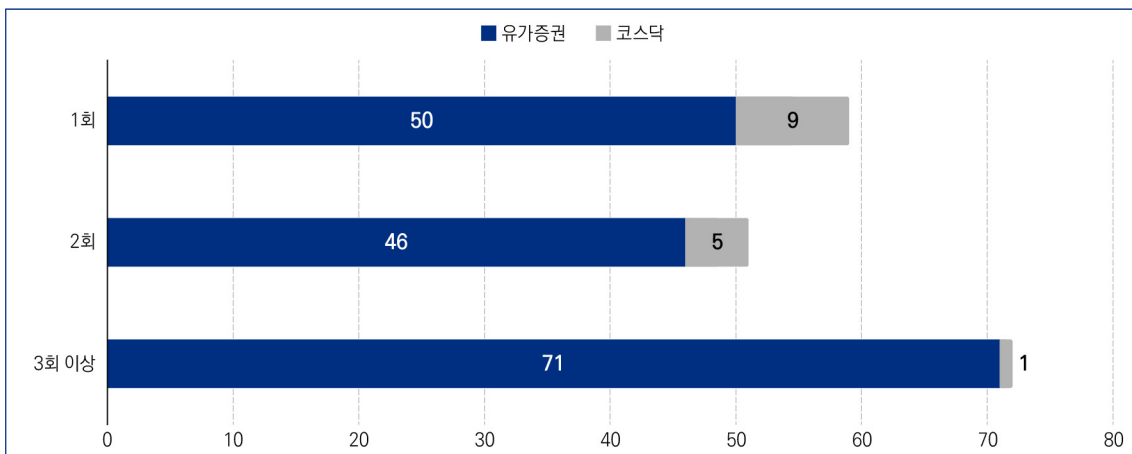
- ① 금융기관의 Scope 3 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IFRS S2는 금융기관도 동일하게 온실가스 배출 또는 투자와 관련된 배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함
 - 반면, ESRS E1은 금융기관의 Scope 3 정보에 대해 탄소회계금융협회(PCAF)의 표준을 고려해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금융 배출량(financed emission) 관련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EFRAG는 현재 개발 중인 산업별 표준에서 금융 배출량 관련 항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함
 - ② 온실가스 배출 목표와 관련하여 IFRS S2는 온실가스 배출 목표가 총(gross)배출 목표인지 순(net)배출 목표인지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순배출 목표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 배출권 사용 계획을 설명해야 함
 - 이와 대조적으로 ESRS E1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총 목표로만 정의하여 탄소 배출권 또는 배출 회피(avoided emission)를 목표 달성 수단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탄소중립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탄소 배출권 사용은 인정함
- 결과적으로 해외 주요 기준의 공시 원칙 및 요구사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범위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나, 기업과 지속가능성 영향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중요한 정보를 보고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방향성은 유사함
 - 특히 복수의 기준을 적용 또는 활용해야 하는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ESG 정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무보고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공시 체계가 단순화될수록 공시 부담과 비용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다양한 기준 간의 상호운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침 및 방법론 개발, 시스템 구축 등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과제임
 - 향후 새롭게 공시 규제를 마련하는 당국의 경우 시장 규모, 특성 등 관할지역의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선별 및 추가하는 과정에서 상호운용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 조사

- 한국거래소 ESG포털 및 전자공시시스템을 활용하여 최근 3년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를 실시한 기업 총 378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을 조사함
- 조사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약 3년으로 2023년 조사기간이 다른 연도에 비해 짧지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 상반기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9~12월 기간의 자율공시가 제외되어도 분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코스닥 상장기업의 자율공시는 최근 3년간 22사에 불과하며,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예: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 상장회사에 대한 공시 의무화가 계획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분석은 유가증권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함
 -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 한국거래소 ESG 포털에 공시된 활용기준, 제3자 검증 등 간소화된 정보를 주로 활용하였음
- **(공시 현황)** 최근 3년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는 2021년 79사, 2022년 141사, 2023년 158사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 전년 대비 78.5%가 증가하며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자율공시가 활성화된 것으로 확인됨
- 표본에서 유가증권 상장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평균 94.9%로 유가증권 상장회사의 연도별 추세 또한 전체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됨(78사 → 131사 → 147사)
 - 기업 규모에 따라서 2023년 자율공시한 유가증권 상장회사의 비중은 2022년말 별도 기준으로 자산총계 2조 원 이상인 기업의 비중이 75.5%(111사), 1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이 23.8%(35사), 1천억 원 미만이 0.7%(1사)로 확인됨
 - 또한 3년 연속 공시한 기업은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공시한 182사 중 72사로 약 40%가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적극적인 공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가증권 상장회사의 경우 3년 연속 공시 비중이 42.5%, 1회 공시 비중이 29.9%로 코스닥 상장회사 각각 6.7%, 60.0% 대비 우수한 공시 참여도가 확인됨
 - 단, 코스닥 상장회사는 2021년 1사만 공시하였고, 2022년 10사, 2023년 11사가 공시한 점에 비추어 향후 신규 발간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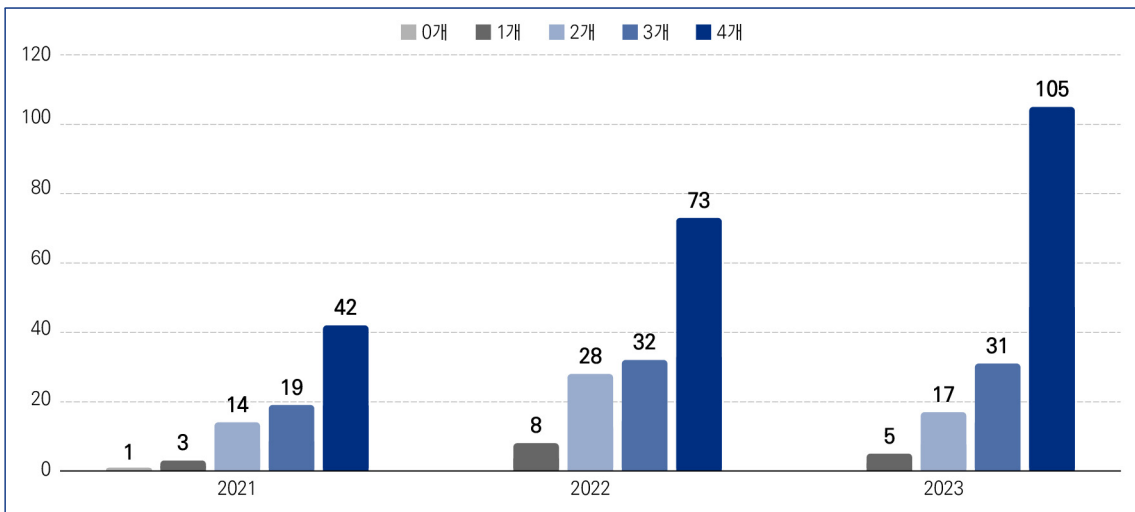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3년간 거래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 횟수



출처: 한국거래소 ESG포털, DART, KCGS

- **(공시 활용기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으로 주로 활용되는 GRI, TCFD, SASB, UN SDGs 총 4가지를 모두 활용하는 회사가 378사 중 220사(58.2%)로 나타나 분석대상 과반이 다양한 공시 기준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도 4개 기준을 모두 활용한 기업 수를 확인한 결과 2021년 42사, 2022년 73사, 2023년 105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3년에 그 비중이 66.5%에 달함

〈그림 2〉 최근 3년간 거래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 활용기준 개수



출처: 한국거래소 ESG포털, DART, KCGS

- 각 기준별로 활용되는 비중은 GRI(99.7%), UN SDGs(84.1%), SASB(79.6%), TCFD(69.8%) 순으로 확인되어 GRI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인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기후 관련 공시만을 다루는 TCFD는 비교적 제한적으로 보고되고 있음
- 한편, 유가증권 상장회사의 경우 SASB 기준이 활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70.5% → 79.4% → 89.9%)에 따라 2023년에 UN SDGs(88.4%) 보다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 관점에서 재무적 중대성이 높은 ESG 정보를 보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인됨

〈표 4〉 최근 3년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 활용기준 현황(유가증권)

구분	GRI	TCFD	SASB	UN SDGs	기업 수
2021	77	52	55	71	78
2022	131	93	104	107	131
2023	147	118	132	130	147
합계	355	263	291	308	356

출처: 한국거래소 ESG포털, DART, KCGS

- **(제3자 검증)** 한편 4사(1.1%)만이 검증받지 않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비교적 ESG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절차를 확보하고 있음
 -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해 독립적인 제3자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지 않은 회사는 유가증권의 경우 2021년 2사 이외에 없었으며, 코스닥은 2022년, 2023년 각 1사만 해당됨
 - 다만 2023년 공시된 유가증권 상장회사 147사의 보고서 검증은 모두 AA1000AS, IASE3000의 Moderate, 제한적 확신 수준(limited assurance)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단계적 검증 강화 계획에 맞추어 향후 검증 수준을 High, 합리적 확신 수준(reasonable assurance)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결론 및 제언

- 최근 해외에서 그린워싱 소송, ESG 이슈 관련 주주제안 등이 증가하는 사유 중 하나로 지속가능성 및 기후 측면에서 실제 운영과 전략 사이의 만연한 불일치를 꼽을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ESG와 지속가능성이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일관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이에 따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비교가능한 표준화된 ESG 정보에 대한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해외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및 규제의 도입은 국내 이해관계자에게 ESG 정보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 분석 결과 유가증권시장 중심으로 공시 기업 수는 물론 공시 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복수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적극 활용하고 독립적인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재무 정보의 영역에서 공시 의무화를 도입하는 해외 제도화 현황에 비해, 국내의 경우 아직 자율적인 공시 환경에 머물러 있어 현재 기업들이 홍보 목적으로 취사선택한 비재무 정보를 향후 중대한 재무 정보를 포함하는 통합보고(integration in reporting)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우선 국내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규제당국은 기업의 ESG 역량 및 준비 수준, 공시 환경 등 관할지역만의 특수성과 주요 거래 국가에 따른 상호운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기업의 보유한 자원 규모에 따라 보고 방식, 보고 내용 및 범위, 제3자 검증 등에 대한 단계적 접근이 요구되고, 통합보고의 최종적인 형태와 상관없이 재무보고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의 적극적인 협력도 수반되는 것이 중요함

- 한편, 국내 기관투자자는 공통된 지속가능성 공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 정보를 주요 요소로 고려하는 방식을 재검토해야 하며, 나아가 향후 공시될 방대한 ESG 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해 ESG 투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분석

홍유정*

- ▶ 사내이사의 이사회 활동 정보가 공시되면서 최근 기관투자자들이 사내이사의 참석률을 토대로 이사회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하는 등 사내이사의 충실한 이사회 참석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 이에 이 글에서는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수준을 파악하고 사내이사의 특성이 이사회 출석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여 국내 기업의 이사회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 ▶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이 사외이사 출석률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나, 2022년에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출석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2022년부터 사외이사 수준으로 사내이사의 출석률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 사내이사 특성 중 이사회 출석률과 유의한 음(-) 관계가 있는 요인으로는 동일인(총수) 여부, 장기 연임, 당해연도 퇴직 여부로 나타나 이에 해당하는 사내이사의 충실성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분석 배경 및 목적

- 2018년 12월 31일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하면서 상장사가 사외이사뿐만 아니라 전체 이사의 이사회 출석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음¹⁾
- 또한, 2019년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가 일부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되면서 제시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19년 4월 최초 제정안)」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발간 의무 기업은 전체 개별이사의 최근 3개 사업년도 이사회 출석률을 공시해야 함²⁾
- 사내이사의 이사회 활동 내역 정보가 공시되면서 2020년부터 사내이사의 저조한 출석률을 사유로 일부 민간 기관투자자들이 재선임을 반대하기 시작하였으며³⁾,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 또한 2022년 2월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개정(안)을 통해 사외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기타 비상무이사에 대해 직전 임기 이사회 참석률이 75% 미만인 경우 선임을 반대하는 의결권행사 기준을 적용할 것을 공표함⁴⁾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책임투자본부 ESG데이터팀 연구원, ddatg0808@cgs.or.kr

1) 금융감독원, 2018. 12.31.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내용"

2) 한국거래소, 2019.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 세부원칙 7-②

3) 이윤아, 2020, "임원 후보에 대한 의결권 반대 사유 공시 및 지배구조 분석", 「ESG 현안분석」

4)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2022,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개정(안)"

- 국민연금은 이러한 개정 배경으로 해외 연기금(NBIM, APG, CalPERS, CPPIB 등)은 일반적으로 사내이사·사외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률이 75% 미만인 경우 선임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음
- 이처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사회 운영에 있어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을 포괄하여 살펴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내이사의 이사회 참석 의무 필요성을 살펴보고 국내 기업의 이사회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할 필요성이 높음
-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내이사의 이사회 참석 의무에 대한 논의를 검토한 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이 사외이사와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으며, 사내이사의 특성이 이사회 출석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음

사내이사의 이사회 참석 의무

-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업무상 차이, 인적 구성 차이⁵⁾를 근거로 사내이사,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기준을 달리 가져가야 한다는 관점과 사내이사의 유연한 경영 행위 저해 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사내이사의 이사회 참석 의무 및 관련 의결권행사 등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사내이사의 충실한 이사회 참석 의무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 사내이사의 이사회 참석 의무의 필요성은 이사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논의와 법적 책임회피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제기되고 있음
 - 이사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논의에 의하면 이사회에 충실히 출석하지 않는 것은 이사의 주의의무 및 책임 이행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국ESG기준원(이하 KCGS)의 모범기준에 따르면 이사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충실히 출석해야 할 것을 이사의 주의의무로써 규정하고 있음⁶⁾

5) 사내이사는 동일인 및 친족 등 총수·지배주주 일가로 구성될 수 있는 반면, 사외이사는 대주주, 주요 주주, 임직원 및 관계인이 선임되지 못하도록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 구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6) 한국ESG기준원, 2021, “ESG 모범기준”

〈그림 1〉 지배구조 모범규준 중 이사의 역할과 책임

이사의 역할과 책임

2.1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사의 주의의무 기업과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기업의 현안과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사회에 충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출처: KCGS ESG 모범규준(2021)

- 국민연금은 이사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통해 투자기업에 이사의 책임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사회 출석률을 활용할 것을 제시하며, 직전 임기 이사회 참석률이 75% 미만인 경우 충실한 직무수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⁷⁾
- 법적 책임회피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이사회 불참이 곧 민감한 결의안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기함
 - 상법 제399조 제3항에 의해 이사회 결의에 있어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이사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나, 결의에 불참한 이사의 경우 결의에 찬성할 수가 없으므로 결의에의 불참은 이사의 법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음. 이 때문에 책임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이사가 있을 수 있음⁸⁾
 - 경제개혁연구소(2020)는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저조를 이사회 결정에 대한 책임 회피 수단이며, 선임에의 결격사유로 보아 사내이사 출석률 기준을 도입할 것을 국민연금에 제안하기도 함⁹⁾

분석 개요

- **(분석 대상)** 2022년에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중 지배구조보고서 발간 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금융회사¹⁰⁾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회사)¹¹⁾는 분석에서 제외함

7) 국민연금공단, 2020,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준 안내”

8) 김화진, 2021, “이사회 경영: ESG와 기업지배구조”, 더벨, pp.304-306

9) 경제개혁연구소, 2020, “2020정기주총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개선과제”, 「ERRI이슈&분석」

10)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에 따라 이사회 운영 현황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는데, 해당 보고서의 작성 기준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상이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1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상근임직원을 둘 수 없는 명목회사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표 1〉 분석 대상

	기업집단명(소속회사 수)
기업집단 (40)	삼성(11), 에스케이(14), 현대자동차(10), 엘지(13), 롯데(8), 포스코(4), 한화(4), 지에스(5), HD현대(7), 신세계(4), 케이티(2), 씨제이(4), 한진(3), 카카오(1), 두산(4), 엘에스(5), DL(3), 중흥건설(1), 네이버(1), 에스-오일(1), 현대백화점(5), 에이치엠엠(1), 금호아시아나(3), 하림(3), 에이치디씨(2), 효성(5), 영풍(3), 셀트리온(1), 호반건설(1), SM(1), 넷마블(2), 케이티앤지(1), 케이씨씨(2), 대우조선해양(1), DB(2), 태영(3), 코오롱(3), 오씨아이(3), 세아(4), 한국타이어(2)

*기업집단 중 농협, 부영, 미래에셋, 교보생명보험, 넥슨, 두나무, 이랜드는 분석 제외 기준에 따라 소속회사 모두가 제외됨

- (데이터 수집)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153개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전체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자료를 수집하여 사내이사 639인, 기타 비상무이사 125인, 사외이사 922인, 총 1,686인의 최근 3개년('20~'22) 출석률 데이터를 구축함(〈표 2〉)

〈표 2〉 수집 데이터 개요

직위 구분	최근 3개년 중 재직* 이사 수(명)	수집 출석률 데이터 건수(건)		
		2020	2021	2022
사내이사	639	455	460	482
기타 비상무이사	125	79	86	79
사외이사	922	666	674	712
총계	1,686	1,200	1,220	1,273

*2020년~2022년 중 1개년도 이상 재직한 경우 포함

사내이사·사외이사 이사회 출석률 차이 분석

- 분석 대상의 최근 3개년도 직위별 출석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은 사외이사 대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연평균 2.97%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사내이사과 사외이사의 재직 평균 이사회 출석률 차이는 5.05%p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6.65%p, 2021년 4.22%p, 2022년 0.78%로 나타나 그 차이가 점차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 최근 3개년도 직위별 이사회 활동 내역

(단위: %)

직위 구분	재직 평균*	평균 출석률			CAGR
		최근 3개년			
		2020	2021	2022	
사내이사	92.03	90.61	93.74	96.08	2.97%
기타비상무 이사	88.83	88.97	90.63	87.66	-0.74%
사외이사	97.08	97.26	97.96	96.86	-0.21%
전체	94.56	94.2	95.85	96	0.95%

*최근 3개년 중 재직기간이 아닌 관계로 미해당인 값에 대해서는 평균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사내이사(기타 비상무이사 제외)와 사외이사의 출석률에 차이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분석을 수행한 결과 2020년, 2021년 2개년 동안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평균 출석률에 유의한 격차가 존재하였지만 2022년부터 사외이사 수준으로 사내이사의 출석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패널을 구분하여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간 이사회 출석률 T-검정을 수행한 결과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2022년에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표 4〉)
- Panel A. 2020년 평균 출석률은 사내이사 90.63%, 사외이사 97.28%로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이 사내이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Panel B. 2021년 또한 5% 유의수준에서 사외이사와 사내이사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이 더 높음('21 평균 출석률: 사내이사 93.75%, 사외이사 97.97%)
 - 반면, Panel C. 2022년 평균 출석률의 경우 사내이사 96.1%, 사외이사 96.88%로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5% 유의수준)

〈표 4〉 사내이사, 사외이사의 연도별 이사회 출석률 T-검정*** 결과

표본	집단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t	p
Panel. A 2020년 출석률	사내	455	90.63 (1.15)**	24.62	-6.39*	0.00
	사외	666	97.28 (0.35)**	8.91		
Panel. B 2021년 출석률	사내	460	93.75 (0.92)**	19.67	-5.04*	0.00
	사외	674	97.97 (0.30)**	7.69		
Panel. C 2022년 출석률	사내	482	96.10 (0.61)**	13.48	-1.20	0.23
	사외	712	96.88 (0.33)**	8.86		

* $p < .05$

**()의 값은 표준 오차를 의미함

***두 집단 간 등분산성이 위배되어 이분산성을 가정하고 t-검정을 실시함

사내이사의 특성과 이사회 출석률 관계 분석

- 앞서 차이 검증을 통해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이 2022년에는 사외이사 수준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으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함
- 이에 이 글에서는 관련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사내이사를 대상으로 이사의 특성과 출석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사내이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총수일가, 장기연임, 과도한 겸임, 퇴직 여부를 채택함
 - 사내이사·사외이사 두 집단 모두 기업집단의 총수, 그의 이해관계자일수록 이사회 출석률이 낮다는 선행 분석이 제기되어 본 분석에서는 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현황과 친족 지정 현황¹²⁾을 통해 개별 사내이사의 총수일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특성이 이사회 출석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규명하고자 함
 - 2018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 의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총수일가의 평균 이사회 출석률이 3/4(75%)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¹³⁾
 - 장기연임이 이사회 참여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분석에 따라 개별이사의 재직 연수와 사내이사 이사회 출석률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함
 - Vafeas(2003)¹⁴⁾는 재임기간의 증가가 이사들의 이사회 참여를 감소시키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낮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반해, 사외이사의 장기재직이 오히려 이사회 참여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음(이윤아·이지윤, 2022)¹⁵⁾
 - 기업집단의 총수의 과도한 겸임이 이사회 불참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계열사 내 겸직 현황을 확인하여 실제 개별 이사의 겸직 회사 수가 이사회 출석률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함
 - 국내의 한 의결권자문사는 2022년 롯데지주 및 롯데제과 주주총회에 앞서 신동빈 회장이 계열사 내 과도한 겸임으로 인해 이사회 출석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재선임을 반대함¹⁶⁾
 - 사내이사의 출석률과 차년도 퇴직(사임·해임·임기만료 등)¹⁷⁾간에 상관관계가 형성되었는지

12)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즉, 친족을 동일인과 경제적 이해관계자로 간주하여 동일인관련자로 지정하여 왔음

13)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2019.04.04., "이사회 출석 꺼리는 총수일가 임원은 스스로 이사회에서 내려와야"

14) Vafeas, Nikos, 2003, "Length of Board Tenure and Outside Director Independence," *Journal of Business Finance & Accounting*, 30(7-8), 1043-1064.

15) 이윤아·이지윤, 2022. "이사 후보에 대한 의결권 반대 사유와 이사회 효율성 및 기업가치와의 관계", 「경영학연구」, 제51권 제6호, pp.1703-1737.

16) 조선일보, 2022.07.18., "신동빈 롯데 회장 과다겸직 논란...시민단체 "사익추구, ESG 경영 걸림돌"

17) 퇴직으로 인해 임원 변동이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살펴봄

추가로 살펴보기 위해 2020년~2022년 중 특정 연도에 퇴직하였는지 그 여부를 변수로 활용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사내이사의 이사회 활동 내역 공시 이후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이 재선임 및 퇴직 등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임

〈표 5〉 사내이사의 특성 및 이사회 출석률 변수

변수		설명
이사회 출석률	재직 평균 출석률	개별 사내이사의 재직 동안의 평균 이사회 출석률(%) : 재직기간이 아닌 관계로 미해당인 값에 대해서는 평균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2022년 출석률	개별 사내이사의 재직기간 내 개최된 연도별 이사회의 출석률(%) : 재직기간 외에 개최된 이사회에 대해서는 출석률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2021년 출석률	
	2020년 출석률	
총수 일가	동일인 여부	개별 사내이사의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 : 사내이사가 동일인(총수)이면 1, 아니면 0
	친족 여부	개별 사내이사의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지정 여부 : 사내이사가 동일인(총수)의 친족이면 1, 아니면 0
장기 연임	재직기간	개별 사내이사의 재직기간(연) : 재직 중일 경우 현재까지의 재직기간으로 산정
과도한 겸임	2022년 겸임 회사 수	개별 사내이사가 기업집단 계열사 중 등기이사로 겸직하고 있는 회사 수(개)(비상장 회사 포함)
	2021년 겸임 회사 수	
	2020년 겸임 회사 수	
퇴직 여부	2022년 퇴직 여부	개별 사내이사의 연도별 퇴직 여부 : 퇴직으로 인해 임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모두를 포함하며 특정 연도에 퇴직하였으면 1, 아니면 0
	2021년 퇴직 여부	
	2020년 퇴직 여부	

- 사내이사의 특성 및 이사회 출석률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6〉과 같음
 - 전체 사내이사 중 동일인으로 지정된 이사는 32명(5%), 친족으로 지정된 이사는 52명(8%)으로 나타남
 - 사내이사의 평균 재직기간은 5.24년이며, 현대모비스 정몽구 前 이사가 45년 재직(1977년 최초선임 2021년 퇴임)으로 분석 대상 중 가장 긴 기간 장기 연임한 것으로 나타남
 - 3개년 동안 겸임 회사 수가 가장 많은 사내이사는 모두 기업집단 SM의 사내이사로 나타났음
 - 2020년 SM 최승석 대한해운 이사는 14개사, 2021~2022년 SM 우오현 대한해운 이사 13개사의 계열사 등기 이사를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 기초통계량

	변수	표본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이사회 출석률	재직 평균 출석률(%)	639	92.04	21.11	0	100
	2020년 출석률(%)	455	90.63	24.62	0	100
	2021년 출석률(%)	460	93.75	19.67	0	100
	2022년 출석률(%)	482	96.10	13.48	0	100
총수일가	동일인 여부	639	0.05	0.22	0	1
	친족 여부	639	0.08	0.27	0	1
장기연임	재직기간(연)	639	5.23	4.73	1	45
과도한 겸임	2020년 겸임 회사 수(개)	639	1.73	1.49	1	14
	2021년 겸임 회사 수(개)	639	1.64	1.31	1	13
	2022년 겸임 회사 수(개)	639	1.56	1.22	1	13
퇴직 여부	2020년 퇴직 여부	639	0.12	0.32	0	1
	2021년 퇴직 여부	639	0.12	0.33	0	1
	2022년 퇴직 여부	639	0.13	0.34	0	1

- 사내이사의 특성과 이사회 출석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7〉)
 - (총수일가) 동일인 여부와 이사회 출석률은 최근 3개년도 모두(재직 평균 포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친족 여부는 이사회 출석률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총수일가라는 사내이사의 특성 중 총수(동일인)만이 이사회 출석률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동일인 여부와 이사회 출석률 간의 상관계수는 2022년 -0.1065로 전년도('21 : -0.2235, '22 : -0.2172) 대비 관련성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장기연임) 재직기간과 이사회 출석률 간의 관계는 2020년, 2021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2년에는 그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2021년 또한 -0.1038, -0.1461로 낮은 음(-)의 상관계수를 보임
 - (과도한 겸임) 계열사 내 겸임 회사 수는 이사회 출석률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퇴직 여부) 3개년 모두 같은 연도의 퇴직 여부와 출석률 간에 비교적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출석률과 퇴직 여부 간의 관계는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 2022년 퇴직 여부와 2022년 출석률의 상관계수는 -0.2636, 2021년 퇴직 여부와 2021년 출석률 간의 상관계수는 -0.3774, 2020년 퇴직 여부와 2020년 출석률의 상관계수는 -0.4650으로 나타남
 - 2022년까지 그 상관관계가 점차 약화되었으나 비교적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주었음
 - 2022년도 퇴직 여부와 2021년, 2020년 출석률 간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으나, 그 상관계수가 각각 0.1110, 0.1412로 다소 낮은 편이며, 2021년 퇴직 여부와 2020년 출석률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전년도 출석률은 차년도 퇴직 여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표 7〉 사내이사의 특성과 이사회 출석률 간의 상관관계

변수		이사회 출석률			
		재직 평균	2020	2021	2022
이사회 출석률	재직 평균	1			
	2020년 출석률	0.9417*	1		
	2021년 출석률	0.7756*	0.4482*	1	
	2022년 출석률	0.7400*	0.2031*	0.2861*	1
총수일가	동일인 여부	-0.1569*	-0.2172*	-0.2235*	-0.1065*
	친족 여부	0.012	0.0295	-0.0384	0.004
장기연임	재직기간	-0.1379*	-0.1038*	-0.1461*	-0.0559
과도한 겸임	2020년 겸임 회사 수	0.0529	0.0083	-0.0104	0.0068
	2021년 겸임 회사 수	0.0529	-0.039	-0.0288	0.0379
	2022년 겸임 회사 수	0.0666	-0.0041	0.0223	0.0495
퇴직 여부	2020년 퇴직 여부	-0.4694*	-0.4650*	.	.
	2021년 퇴직 여부	-0.0645	0.0653	-0.3774*	.
	2022년 퇴직 여부	0.0594	0.1412*	0.1110*	-0.2636*

* $p < .05$

결론 및 시사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를 중심으로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20년, 2021년 동안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간 이사회 출석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이 사외이사보다 낮았으나, 2022년부터 사외이사 수준으로 사내이사의 출석률이 개선됨
- 사내이사 특성 중 이사회 출석률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동일인(총수) 여부, 장기연임, 당해연도 퇴직 여부로 나타났으며, 과도한 겸임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음
- 총수일가 중 동일인(총수)인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이 유의하게 낮은 경향이 있으므로, 동일인(총수)의 충실성에 대한 이사회의 엄격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임
 - 국민연금의 사내이사 출석률 기준 적용을 통한 의결권 행사가 이러한 이사회 관행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됨
 - 특히 2022년부터 동일인(총수) 여부와 출석률 간의 관계가 약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동일인(총수)의 출석 의무 이행에 대한 노력이 기대됨

- 계열사 내 겸임 회사 수는 이사회 출석률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사내이사의 충실성을 살펴볼 때 계열사 내 과도한 겸임과 이사회 출석률을 독립된 지표로써 바라볼 필요가 있음
 - 또한 해외 의결권 자문회사 Glass Lewis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 내 겸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고하지 않고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상장회사의 겸임(2개 이상)만을 반대하고 있어, 더욱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기업집단 외 겸직에 대한 분석을 추후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분석 설계 시 전년도 출석률과 차년도 퇴직 여부 간 영향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오히려 3개년 모두에서 이사회 출석률과 그해 퇴직 여부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전년도 사내이사의 출석률이 퇴직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긴 어려움
 - 오히려 같은 연도 퇴직 여부와 이사회 출석률 간의 유의한 음(-)의 관계가 규명되어 퇴직을 앞둔 사내이사들이 그해의 이사회 출석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실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집단의 퇴직 사내이사 출석률 현황을 살펴보면, 퇴직을 앞둔 사내이사가 사임 전 개최된 모든 이사회에 불참하는 경향성이 관측됨(〈표 8〉)
 - 임기만료 시점 이전까지의, 즉 재임 동안의 업무 이행은 이사의 의무이므로 퇴직을 앞두었더라도 이사회 출석을 소홀히 하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8〉 퇴직 사내이사 이사회 출석 현황 사례

기업 집단	이사	출석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비고
삼성	A	0%	불참	불참	미해당						'21 3차 사임
	B	0%	불참	불참	미해당						
LG	F	0%	불참	불참	미해당						
SK	C	0%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미해당	'21 8차 사임
현대 자동차	D	0%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미해당				'22 5차 사임
	E	0%	불참	불참	불참	미해당					'22 4차 사임

*출처: 각 회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재구성

Global News

1. 캐나다, 화석연료보조금 단계적 폐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정선아*

- 캐나다 정부는 화석연료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Inefficient Fossil Fuel Subsidies : Government of Canada Guidelines)을 발표함¹⁾
 - 본 가이드라인은 화석연료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합의한 ‘글래스고 기후 합의’(Glasgow Climate Pact)²⁾에 대한 최초의 이행안으로, 기존의 화석연료 관련 비과세조치에 평가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것을 명시함
 - 또한 캐나다 정부는 본 가이드라인 제정 및 화석연료 부문에 대한 단계적인 보조금 지급 폐지를 통해 청정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증대와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 정립을 추진함

- 본 가이드라인은 화석연료보조금 관련 신규 법안 발의 및 기존의 비과세조치 검토를 위한 평가 프레임워크 등을 제시함
 -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부처의 장은 법안 발의 전 2단계의 평가 프레임워크를 통해 해당 법안이 화석연료보조금 지원 법안으로 식별될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각 부처는 기존 화석연료 비과세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해야 함
 - 다만, 가이드라인은 상당량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예외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일부 기존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예외조항은 기존 화석연료 프로젝트 중 GHG 배출량 감축, 청정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 지원, 원거리 지역에 대한 필수에너지 제공, 원주민의 화석 연료 사업 참여 지원, 비상 대응을 위한 단기지원, 203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반한 경우 등 크게 총 6개 분야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유지를 명시함

- 우리나라는 21년 G20 로마 정상회의,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등에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한 바 있으나, 관련 입법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실 연구원, sac@cgs.or.kr

1)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2023, "Inefficient Fossil Fuel Subsidies Government of Canada-Guidelines", <https://www.canada.ca/en/services/environment/weather/climatechange/climate-plan/inefficient-fossil-fuel-subsidies/guidelines.html> [2023.09.13]

2) 화석연료보조금의 폐지는 2009년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일환으로 처음 발표되었으며, 이후 2021년 개최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글래스고 합의를 통해 각국의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합의함

- 앞선 논의에도 불구하고 2022년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관련 보조금 규모는 GDP 대비 8.1%로 전년(5.7%) 대비 2.3%p 증가하였음³⁾
- 화석연료보조금 폐지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국내 화석연료 보조금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보조금과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 또한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국내 화석연료보조금의 경우 대부분 취약계층 보호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⁴⁾

3) IMF, 2023, "IMF Fossil Fuel Subsidies Data: 2023 Update",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P/Issues/2023/08/22/IMF-Fossil-Fuel-Subsidies-Data-2023-Update-537281> [2023.09.13]

4) 김종호, 2018, "화석연료보조금 현황 및 개편 방향", 「KEI포커스」, 제6제13호

Global News

2.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동향

박진하*

- ‘2050 탄소중립’, SDGs 2030 아젠다 달성의 중간 지점인 현재, 이산화탄소(이하 ‘CO₂’)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¹⁾. 일부 연구 및 보고서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 저감의 노력(재생에너지 증가,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뿐만 아니라 대기 중 탄소 제거의 활동이 수반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함²⁾. 이에 따라 탄소 제거 기술(Carbon Dioxide Removal)이 기후위기 완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이자 대안적인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음³⁾
- 탄소 제거 기술은 대기 중 이미 배출된 CO₂를 제거하는 기술로, 가장 대표적인 기술은 대기 중의 탄소를 포집하여 저장 및 활용하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하 ‘CCUS’) 기술이 있음
 -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는 대규모 탄소 배출 지점⁴⁾에서 CO₂를 포집하는 기술을 포괄함. 포집된 CO₂를 현장에서 이용하거나, 파이프라인, 선박, 철도 등을 통해 압축 및 운반하여 활용하거나 지층에 주입하여 저장함⁵⁾. CCUS는 크게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와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로 구분됨

〈표 1〉 CCUS 기술 요약

단계별 기술	포집 기술(Capture)	저장 기술(Storage)	활용 기술(Utilization)
기술 요약	배출 지점에서 CO ₂ 를 분리하여 포집하는 기술	포집된 CO ₂ 를 지층 깊숙이 저장하는 기술	직접 활용, 화학적, 생물학적 반응 등을 통해 포집된 CO ₂ 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원료/물질/제품 등으로 전환하는 기술
기술 구분	CCS(포집 후 저장 기술): 포집된 CO ₂ 를 고갈된 유전, 가스전, 대염수층 등 지층 깊숙이 저장하는 기술 CCU(포집 후 활용 기술): 포집된 CO ₂ 를 탄소 기반의 사용 가능한 원료로 전환하고, 연료, 화학물질, 건축자재 등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활용하는 기술		
대표적 기술 또는 사례	(기술) DAC(직접공기포집) ⁶⁾	(기술) CO ₂ -EOR(원유회수증진) ⁷⁾ (사례) Northern Lights Project ⁸⁾	(사례) Carbon8 Systems ⁹⁾

출처: IEA,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내용을 재구성

*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실 연구원, jhpark@cgs.or.kr

1) WMO의 2023 기후과학 합동보고서(United in Science 2023, 2023.09.12.)에 따르면 2022년 CO₂ 배출량은 전년 대비 전 세계적으로 1% 증가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까지도 전 세계 평균 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2) IPCC, Climate Change 2023: AR6 Synthesis Report

3) IEA, What i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CCUS)?

URL: <https://www.iea.org/energy-system/carbon-capture-utilisation-and-storage>,

WRI Carbon Removal, URL: <https://www.wri.org/initiatives/carbon-removal>

4) 일반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나 화학 연료,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산업 시설을 의미함

5) IEA, What i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CCUS)?,

URL: <https://www.iea.org/energy-system/carbon-capture-utilisation-and-storage>

-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CCUS 기술을 채택하고, 해당 기술의 개발 및 지원 등을 통해 기술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있음
- **미국:** 2022년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내 CCUS 관한 세액공제 지원 사항을 포함함¹⁰). 특히, 지난 8월 11일, 미국 에너지부(DOE)는 시설 건설을 위해 35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DAC 허브 프로젝트'를 발표함¹¹)
- **EU:**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통해 CCUS를 주요 탄소 감축 수단으로 선정하며 관련 산업을 EU 역내에 유치하기 위한 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수립함¹²)
- **중국:** 2021년 9월과 10월, 중국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며 CCUS 등 관련 기술 발전에 대한 필요성과 지원의 의지를 표명함¹³). 현재 진행 및 계획 중인 시범 프로젝트는 약 40개로 CO₂포집 역량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음¹⁴)
- **우리나라:**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 수단으로 CCUS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3월 21일 발표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CCUS를 통한 감축 목표는 기존보다 80만 톤을 확대한 1,120만 톤임. 현재 CCUS 확대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인프라 구축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진행 중임¹⁵)
- **(CCS 도입 현황)** Global CCS Institute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총 37개의 CCS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50.6백만 톤의 CO₂를 포집 및 처리하고 있음. 현재 국가별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설비 현황은 <표2>와 같음¹⁶). 그 중 미국이 전체 운영 시설 중 45%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포집량 중 약 47%를 차지하고 있음. 우리나라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2030년 이전 운전을 목표로 개발 중임

6) DAC(Direct Air Capture)는 대기 중에 배출된 CO₂를 직접 포집하여 제거하는 기술로,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CO₂를 대량으로 포집하는 기술임

7) CO₂를 유전에 주입하여 석유 채취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기술임. 땅속으로 주입하지만 석유 생산량을 증대하는 효과로 인해 CO₂ 비 전환 활용 기술로 분류하기도 함

8) 에퀴노르(Equinor), 셸(Shell), 토탈에너지(TotalEnergies)의 합작 투자 프로젝트로 최초의 상용화된 CCS프로젝트이며 북해 슬레이프너 유전에서 배출된 CO₂를 포집하여 해저 1,000m 사암층에 주입함

9) 프랑스 시멘트 기업인 VICAT 공장에 통합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탄소화 기술을 적용한 사례로, CO₂를 직접 포집하여 시멘트 바이패스 더스트를 건설 골재로 전환하는 데에 활용함

10) 영구 저장된 CO₂는 톤당 최대 85 달러 자원, EOR 및 기타 산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톤당 최대 60 달러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항을 포함함

11) US Department of Energy,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Up To \$1.2 Billion For Nation's First Direct Air Capture Demonstrations in Texas and Louisiana, 2023.08.11

12) EC, The Net-Zero Industry Act: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climate neutrality, URL: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industry/sustainability/net-zero-industry-act_en

13) 이시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국의 CCUS 산업·정책 동향

14) KOTRA, 중국의 탄소포집(CCUS) 산업 발전 가속화, 2022.09.14.

15) 국무조정실,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URL: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52968&article.offset=0&articleLimit=10>

16) 2022 Facilities list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으며, 괄호 안의 수치는 2023년 운전 예상 설비 대수 및 용량임, Global CCS Institute, URL: <https://www.globalccsinstitute.com/news-media/latest-news/q2-2023-ccs-facilities-update/>

〈표 2〉 상업 운전 중인 CCS 설비 현황(국가별)

국가	개수	연간 CO ₂ 포집 용량 (백만 톤)	적용 분야
미국	17(3)	21.98(0.73)	발전, 천연가스 가공, 에탄올 생산, 수소 생산 등
유럽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헝가리	4	1.86	DAC, 천연가스 가공 등
중국	4(1)	3.2(1.5)	발전, 천연가스 가공, 메탄올 생산 등
브라질	1	7	천연가스 가공
캐나다	5	4.4	정유, 천연가스 가공, 수소 생산, 발전
말레이시아	(1)	평가 중	천연가스 가공
카타르	1	2.2	천연가스 가공
사우디아라비아	1	0.8	천연가스 가공
UAE	1	0.8	철강 생산
호주	2	4.2	천연가스 가공 등

출처: Global CCS Institute, Global Status of CCS 2022